

2026. 8.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 초안 발표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국가판권국은 2026년 7월 12일 자 공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개정 초안 의견수렴안)¹⁾」(이하 '개정초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2026년 8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실시조례는 2002년 8월 공포되어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을 뿐, 2020년 11월 저작권법 3차 개정(2021.6.1. 시행) 이후에도 하위 행정법규 차원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초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조문 수를 현행 38개조에서 49개조로 확대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다만 개정초안은 아직 정식 공포 전 단계의 행정법규 초안으로서, 향후 국무원 심사 과정에서 조문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주요내용

1) 저작물·관련 개념의 전면 정비(제2조~제4조)

제3조는 종전 '영화작품 및 영화 유사 촬영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시청각저작물(视听作品)'로 대체하고, 정의를 "일정한 매체에 고정되고 음향의 유무를 불문한 일련의 연속 동적 화면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장치로 상영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전파되는 저작물"로 재구성하였다. 예능·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웹드라마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신형 콘텐츠 유형의 저작물성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건축저작물(제3조 제9호)의 범위는 종전의 완성된 건축물·구조물에서 이를 표현하는 설계도·조감도·모형까지 확대되었고, 반대로 녹화제품(제4조 제2호)은 "고정 녹화설비로 기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좁혀져 창작성을 요하는 시청각저작물과의 경계가 보다 명확해졌다.

실연자(제4조 제5호) 정의에서는 종전 '연기자·공연단체 또는 기타 문학·예술작품을 표현하는 자' 중 '공연단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문학·예술작품 또는 민간문예표현을 노래·무용·연설·낭송·연주 등으로 표현하는 자'로 재구성되어, 민간문예표현이 새로운 표현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2020년 발효된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의 이행 취지와 맞닿아 있다.

1) 国家版权局, 「关于公开征求《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修订草案征求意见稿)》意见的公告」, 국가판권국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26.7.17., https://www.ncac.gov.cn/xxfb/tzgg/202607/t20260713_998657.html

2) '창작' 개념의 재확인과 AI 생성물 논의와의 접점(제2조)

개정초안 제2조는 '창작'을 문학·예술·과학 작품을 직접 창출하는 지적 활동으로 재확인하면서, 조직·자금·자재 제공이나 자문 등 보조적 행위는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였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정면으로 규율하지는 않았으나,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AI 생성 이미지 관련 사건²⁾에서 이용자가 프롬프트 입력·파라미터 조정·결과물 선별 등을 통해 개성적 표현을 형성하였는지를 심사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2조의 '직접 창출' 요건은 이러한 사법실무의 연장선에서, 향후 AI 보조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 기준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3) 서명 추정 규칙 신설 및 등록증명의 효력(제9조·제10조)

개정초안 제9조는 저작물에 서명한 자연인·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자로 추정하는 규칙을 신설하고, 이를 실연·판식설계·녹음녹화제품·방송에 대한 권리표지에까지 확장 적용하였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의 기존 사법해석상 증거규칙을 행정법규 차원으로 격상한 것으로, 1인 창작자·중소 콘텐츠 제작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10조는 저작권 등록기관이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등록사항의 초보적 증명'으로만 규정하여, 등록만으로 곧바로 권리귀속이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였다.

4) 업무상저작물·위탁저작물·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규칙 정비(제11조·제13조~제15조·제17조)

제13조는 업무상저작물(職務作品)에서 '업무상 임무'를 자연인이 소속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에서 이행해야 하는 직책으로, '물질기술조건'을 소속기관이 창작을 위해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설비·자료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를 전제로 첫째, 공동저작물 중 분할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각 공동저작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공동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부분의 저작권을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둘째, 업무상저작물 완성 후 2년 이내에 저작자가 소속기관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을 허락한 경우 그 보수를 저작자와 소속기관이 약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으며, 이 2년의 기간은 저작자가 소속기관에 작품을 교부한 날부터 기산한다(제14조). 셋째,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위탁저작물(委託作品)의 경우 위탁자는 약정된 이용범위 내에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위탁 목적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다(제15조). 넷째, 공동저작자 일방이 사망하고 그 저작재산권에 대해 상속인·수유자가 없는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가 이를 향유하도록 하여 권리의 공백을 방지하였다(제17조).

5) 법정 허락 사용료 지급기한 연장 및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경우 의무화(제37조)

2) 李某某诉刘某某侵害作品署名权及信息网络传播权纠纷案, 北京互联网法院 (2023)京0491民初11279号, 2023.11.27. 선고.

현행 실시조례 제32조는 법정 허락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개정초안 제37조는 이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지급 경로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지급으로 일원화하고, 음반의 공개전파에 대한 보수지급(저작권법 제45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권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법정 허락 이용 관계에서 집중관리단체의 법정 창구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상업시설·방송사·온라인 라디오 등 음반 이용 사업자에게 실무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6) 시청각저작물 실연자 권리귀속 및 방송권·전송권 경계 명확화(제34조·제35조·제41조·제42조)

영화·텔레비전드라마 등 시청각저작물에서 실연자(배우)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개정초안 제35조는 실연에 관한 경제적 권리는 제작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였다. 다만 실연자는 성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와 자신의 실연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동일성유지권에 상응하는 인신권)를 향유하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는 업무상 실연의 경우 실연자와 소속 공연단체가 실연 관련 권리를 실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공연단체는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와 비독점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유통 실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제41조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제12호(방송권·전송권) 및 제45조·제47조에서 사용하는 '유선 또는 무선'을 전파·유선케이블·정보네트워크 등 모든 기술적 전송수단을 포괄하는 기술중립적 개념으로 명시하였다. 제42조는 음반의 '공개전파'(제45조의 방송사용료청구권 대상이 되는 비대화형 전송)에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음반을 제공하는 주문형(대화형) 전송방식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별도 허락 없이 사용료만 지급하면 되는 방송사용료청구권과, 사전 허락을 요하는 전송권의 경계가 한층 분명해졌다.

7) 기술조치 보호범위 확대와 예외·네거티브리스트 신설(제43조~제45조)

개정초안은 기술조치를 저작물·실연·녹음녹화제품·방송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전파를 방지·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유효한 기술·장치·부품으로 정의하고(제43조), 합리적 사유로 저작물 접근이 곤란한 특정 주체가 권리자에게 우회기술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으며(제44조), 이용자의 네트워크·데이터 안전을 침해하거나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기술조치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리스트³⁾를 도입하였다(제45조).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이 형사판결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건⁴⁾에서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장치(이른바 'dongle')를 제작·판매하여 침해복제물을 유통한 피고인에게

3) '네거티브리스트'는 제45조가 규정한 보호 제외 기술조치 유형을 지칭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 편의상 사용한 표현으로, 개정초안 조문 자체의 표제어는 아니다.

4) 刘某生、刘某侵犯著作权罪案，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2023）沪03刑初23号，2023.4.12. 선고.

저작권침해죄가 인정된 바 있어, 기술조치 보호가 민사책임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권리자 보호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8) 행정처분 요건으로서 '공공이익 침해'의 구체화(제47조)

현행 실시조례는 저작권 위반행위가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개정초안 제47조는 ① 국가 이미지·공공안전 침해, ②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침해, ③ 문화시장질서 교란, ④ 영리목적·상습적 침해행위, 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이 저작권침해죄로 처단한 '런런잉스(人人影视) 자막조' 사건⁵⁾은 무단 영상저작물 32,824편을 유통하고 회원 약 683만 명을 확보하여 불법경영액이 1,200만여 위안에 달했던 사안으로, 이러한 조직적·영리적 침해가 제47조 제4호의 '영리목적·상습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로 꼽힌다. 다만 이 조항은 해석에 따라 대다수 상업적 침해에도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향후 행정개입과 민사분쟁의 경계가 다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 마라케시 조약 이행을 위한 독서장애인 규정 신설(제24조)

제24조는 '독서장애인'과 '무장애 방식'을 정의함으로써 2022년 발효된 「마라케시 조약」상 국제의무를 국내법 차원에서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점자도서·오디오북 등 무장애 형식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도서관·공익기관은 별도의 상업적 이용허락 절차 없이도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실연자 정의 확대 및 실연자 권리귀속 규정과 더불어, 개정초안은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과 「마라케시 조약」이라는 두 국제조약상 의무를 국내 실시조례 차원에서 함께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번 개정초안은 2020년 저작권법 3차 개정 이후 5년여 만에 하위 행정법규의 정합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조문이 38개조에서 49개조로 확대되는 만큼 실질적 개정 범위도 상당히 넓다. 다만 그 무게중심은 개별 저작물 유형의 정의 확장에만 있지 않다. 서명 추정 규칙(제9조), 등록증명의 초보적 증명력(제10조), 위탁·공동저작물의 이용범위 및 제소권 정비(제11조·제15조), 법정 허락 사용료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경유 의무화(제37조)를 함께 놓고 보면, 개정초안은 침해 발생 이후의 구제 규칙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권리귀속→이용허락→정산에 이르는 저작권 거래 전 과정의 인프라를

5) 梁某平等十五人侵犯著作权罪案(人人影视字幕组), 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 (2021)沪03刑初101号.

표준화하려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을 정면으로 규율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창작 개념의 재확인(제2조)과 서명 추정 규칙(제9조)은 향후 AI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해석 기준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침묵'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청각저작물 정의에 예능·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웹드라마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실연자의 권리귀속(제34조·제35조)과 방송권·전송권의 경계(제41조·제42조)를 함께 정비한 것은, 최근 급성장한 신형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의 권리관계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종전에는 개별 사안마다 창작성 요건 충족 여부나 실연자 권리귀속을 다투어야 했던 신형 영상 콘텐츠·플랫폼 서비스가 법정 유형과 명확한 귀속·경계 규칙으로 편입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권리귀속·허가·분쟁해결 전반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정비만으로 실무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제47조가 규정한 '영리목적으로 실시하는 침해행위'는 문언상 대다수의 상업적 침해에 폭넓게 해당할 수 있어 행정개입과 민사분쟁의 경계가 모호해질 소지가 있고, 기술조치의 보호 여부를 가르는 '유효성' 및 '목적 관련성' 요건(제43조·제45조) 또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정식 공포 이후의 판례와 하위 규정을 통해 축적되어야 실무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창작자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진출 시 자사 콘텐츠가 중국 저작권법상 어떠한 저작물 유형(시청각저작물·건축저작물·모형저작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그 분류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명 추정 규칙을 활용하면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반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초고·소스파일·수정이력 등 창작과정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저작물 계약 시 이용범위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위탁 목적 범위 내 무상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음반·법정 허락 사용료 정산 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경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방송사·플랫폼이 음원·영상을 중국에서 유통할 경우 서비스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진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청취·시청하는 주문형(대화형) 전송에는 사전 허락이 필요한 전송권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비대화형 공개전파에는 사후 정산 대상인 방송사용료청구권이 적용되므로, 서비스 방식별로 계약과 정산 구조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초안은 2026년 8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식 공포 시점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정식안 확정 과정과 부칙상 경과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国家版权局, 「关于公开征求《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修订草案征求意见稿)》意见的公告」, 국가판권국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26.7.17., https://www.ncac.gov.cn/xxfb/tzgg/202607/t20260713_998657.html
- 新法速递, 「AI时代的版权悖论:著作权法实施条例修订草案留下的未答之问」, 위챗 플랫폼, 최종 검색일: 2026.7.17., https://mp.weixin.qq.com/s/u6NfKg4B9cPIYm5X_Ji28A